

[참고]

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제3조(의석배정) ① ~ ② (생략)	제3조(의석배정 및 최초 임시회)
<u><신설></u>	① ~ 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③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법 제45조에 따라 사무처장이 소집하되, 집회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의 임기 개시일로 한다. 다만,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
<u><신설></u>	④ 사무처장은 최초 임시회 의사 일정 운영계획안을 작성하여 의원 당선자에게 집회일 7일 전까지 통지한다.
<u><신설></u>	⑤ 제4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규칙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이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전반기 의장이 선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u><신설></u>	⑥ 제5항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한 때에는 의원 당선자에게 그 이유와 변경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
현행	개정
<u>제24조(위원회의 제출의안)</u>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 <u>제26조(수정동의) ①</u>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. <u>②</u>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. <u>③</u>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.	<u>제24조(위원회 제안 의안의 처리)</u>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(대안을 포함한다)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의한다. 다만,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 <u>제26조(수정동의) ① 본회의에서 심의할</u> 의안에 대한 의원의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(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)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u>② 제1항에 따라 동일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동의가 발의되는 경우 의원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찬성할 수 있으며, 그 외의 수정동의 발의에 중복으로 찬성 의사를 표명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<u>③</u> 위원회는 소관사항 이외의 의안에 대하여는 수정안(대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제출할 수 없으며,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자 없이 바로 의제가 된다.

현행	개정
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<u>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</u>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. 제32조(의안의 이송)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. 다만,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이송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④ 의안에 대한 <u>의원발의</u> 대안은 위원회에서 <u>그 원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기 전(토론종결 전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</u> 한다. 이 경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. ⑤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에 대한 <u>의원의 수정동의는 그 원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당해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발의한다.</u> 제32조(의안의 이송) ----- ----- -----.
제73조의2(시정질문) ① ~ ⑤ (생략) ⑥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<u>의장에게 제출하여야</u> 하며, 의장은 늦어도 시정 질문 시간 48시간 전(휴무·공휴일은 제외한다)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	<단서 삭제> 제73조의2(시정질문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<u>소속 위원장에게 제출하고</u>, 위원장은 소속 위원의 질문일별 질문순서와 질문요지서를 의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현행	개정
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제73조의3(답변 및 추진상황 보고 등) ① 시장과 교육감은 <u>일괄답변이나 구두답변을 요구한 질문에 한하여 늦어도 답변시간 3시간 전까지</u> 의장에게 답변서를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이를 답변이 시작되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. ② ~ ③ (생략)	⑦ 의장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늦어도 시정 질문 시간 48시간 전(휴무·공휴일은 제외한다)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 ⑧ 위원회별 질문순서는 「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5조의 위원회 순서에 따르며, 시정질문일마다 순차적으로 적용한다. 이 경우 대별 최초의 순서는 의장이 정한다. 제73조의3(답변 및 추진상황 보고 등) ① ----- <u>일괄답변이나 구두답변 그리고 시정질문기간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질문에 대하여는 늦어도 답변시작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
<u><신설></u>	<u>제88조의4(의정활동상황의 공개)</u> ① 의장과 위원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,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연간 회기운영계획,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.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전심사 보고서 3. 행정사무감사·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. 의안(청원을 포함한다)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. 의원별 회의출석률, 의안발의, 시정질문 현황 6.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